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호 관련 242

제안년월일: 2022년 12월 19일 제 안 자: 교 통 위 원 장

### 1. 수정이유

-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항을 "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"에서 "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"으로 변경할 경우 보고내용이 명확 하지 않을 수 있고,
-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'20년 5월 합의문을 채결하여 재정 지원 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내용 을 현행조례와 같이 유지하고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○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의2)

### 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의2 중 "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"를 "회계 감사를 받고 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위원회안)
제3조의2(외부회계감 사)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	제3조의2(외부회계감 사)	제3조의2(외부회계감 사)
부의 감사인에 의한 <u>회계감사를</u>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 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&lt;</u> 후단 신설>	회계감사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다만 시장은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회계감사를 시행할	회계감사를 받고 그   의계감사를 받고 그       후단 개정안   과 동일 >
제7조(지원제외) 시장 은 제3조부터 <u>제5조</u> 까지의 재정지원 및 <u>평가</u> 를 위한 자료제 출을 거부하는 사업 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	경우 그 비용을 지원 <u>할</u> 수 있다. 제7조(지원제외) <u>제6조</u> -  평가, 정산보고	제7조 < 개정안과 동일 >

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중 "제5조"를 "제6조"로, "평가"를 "평가, 정산보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재정지원을	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
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	
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	
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	
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&lt;후단</u>	
<u>신설&gt;</u>	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
	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
	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제7조(지원제외) 시장은 제3조부터	제7조(지원제외)
<u>제5조</u> 까지의 재정지원 및 <u>평가</u> 를	<u>제6조 평가, 정산</u>
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	보고
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	
수 있다.	